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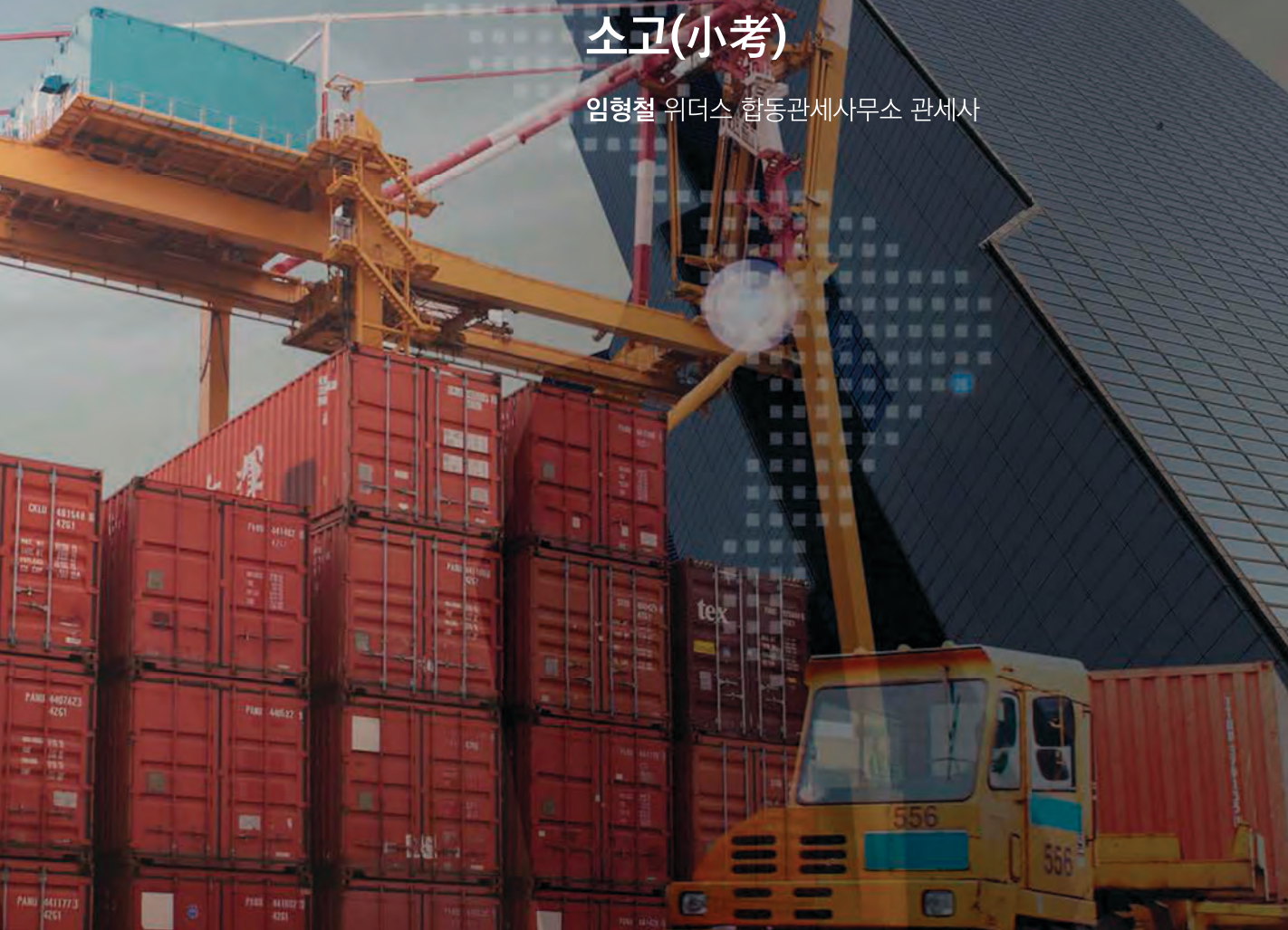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기업 원산지관리 업무에 대한
소고(小考)

임형철 위더스 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기업 원산지관리 업무에 대한 소고(小考)



임형철
위더스 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FTA의 여러 가지 혜택 중 기업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바로 수출입 물품에 관세절감이며, 관세절감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업무가 바로 "원산지증명" 업무이다.

원산지증명서는 종류가 다양하고 동일국가가 여러 협정을 맺은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객사가 원산지증명을 요구한다면 요구를 받은 즉시 어떤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확인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FTA 원산지증명은 수출물품이 FTA 원산지 기준임을 서류로서 입증해야 하는 업무이며 제조관련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비 제조 수출기업의 경우는 국내 매입단계에서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FTA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제조사와의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1. 시작하며

2022년 2월부터 우리나라도 RCEP¹⁾(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58개 국가와 18개의 FTA를 체결한 명실상부한 FTA 강대국으로 한걸음 발돋움 하게 되었으며, 주요 경제권 중 그 동안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았던 일본까지 RCEP을 통해 FTA의 효과가 발생됨으로써, 이제 FTA원산지 업무는 우리 기업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업무가 되었다.

이러한 FTA의 여러 가지 혜택 중 기업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바로 수출입 물품의 관세절감이며, 관세절감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업무가 바로 “원산지증명” 업무이다.

즉, 수출기업은 해외바이어의 관세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증명” 요청을 받게 될 것이고, 국내 내수기업도 납품하는 고객사로 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원산지증명” 요청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FTA 원산지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기업의 원산지 관리업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세사의 관점으로 서술해보고자 한다.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가 체약국이다.

2. 고객의 정확한 요구를 확인하자

원산지증명이란 우리 회사가 수출하거나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기업 스스로 확인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객관적인 “서류”로서 증명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우리 회사에서 직접 제조한 물품이면 당연히 한국산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FTA 협정문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서류”로 입증해야 하는 업무이고, 원산지 증명에 따른 결과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 고객사에게 제공해야 고객사가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는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증명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과 상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실례로 고객사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한 것인데 이를 일반 비특혜증명서로 오인하여 비특혜증명서를 제공하였다가 현지에서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통관이 지연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또는 베트남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요청에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였는데 통관 단계에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여 수입국의 특혜관세율이 달라지거나 역시 불필요한 물류비가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한다.²⁾

이렇듯 원산지증명서는 종류가 다양하고 동일국가가 여러 협정을 맺은 경우³⁾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객사가 원산지증명을 요구한다면 요구를 받은 즉시 어떤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확인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2)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모두에 해당하는 국가이다.

3) 예를 들어 중국은 APTA, 한-중 FTA, 한-RCEP 모두 해당이 된다.

3. 제조사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다

원산지증명 업무는 수출하거나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를 기업 스스로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때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제조·생산·구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이다.

즉 수출 또는 공급하는 제품 1단위가 어떤 원재료로 구성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자재명세서>, 제품이 어디에서 어떤 공정으로 생산되는지를 입증하는 <제조공정도>, 제품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를 어디에서 얼마에 구매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거래명세서> 등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업체만이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조사에게 구매한 물품을 그대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 수출업체 또는 그대로 국내에 판매하는 국내

공급업체는 고객사의 FTA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았을 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당사의 고객사인 한 인쇄기계 수출업체는 수출 계약 당시 태국 바이어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았으나, FTA 원산지증명서를 기존에 항상 발급하던 상공회의소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처럼 간단하게 발급⁴⁾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늘 하던 대로 선적에 임박하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재명세서를 비롯한 각종 원산지 입증자료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자료는 제조사가 아닌 수출자 입장에서 확보 자체가 매우 어려워 큰 낭패를 보게 되었다.



4)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혜택과 무관하므로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패키리스트만 있으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업체는 부랴부랴 제조사를 찾아가서 협조 요청을 하고 관세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어렵게 작성하여 간신히 한국산 판정 자료를 구비 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었는데 이미 선적일로부터 한 달이 넘게 시간이 경과하여 현지 통관 보류에 따른 비용은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었던 사례가 있다.

이처럼 FTA 원산지증명은 수출물품이 FTA 원산지 기준임을 서류로서 입증해야 하는 업무이며 제조관련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비 제조 수출기업의 경우는 국내 매입단계에서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FTA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제조사와의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4. 도장만 찍어 넘겨주는 서류가 절대 아니다

FTA가 넓게 확대가 됨으로써 원산지증명 업무는 비단 수출기업의 고유 업무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

특히 수출을 하지 않는 내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내수기업은 <원산지확인서>의 정확한 개념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고객사의 요청대로 서명이나 도장만 날인하여 고객사에게 넘겨주는 것이 많은 기업의 실제 상황이다.

<원산지확인서>란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5호에 근거한 서류로 “우리 회사가 공급한 제품은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한국산 물품”임을 스스로 판단하여 발급하는 “법적 서류”이다.

즉, 위에 언급한 <FTA 원산지증명서> 동일한 성격과 효력이 부여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고, 단지 해외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용도가 아닌 국내 내수거래에서 통용되는 원산지 증명서류인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공급물품이 FTA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한국산 물품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신고하는 행위이고, 이를 받은 수출자나 고객사는 우리 회사가 발급한 확인서상 내용을 신뢰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다시 다음 업체에게 2차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즉, <원산지확인서>는 위에 설명한 “제조·생산·구매” 관련 자료를 근거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근거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고,

모든 근거자료는 자체적으로 보관⁵⁾이 가능한 상태에서 발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수입 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 요청에 대응하게 되었을 때 적법한 절차대로 발급되지 않은 <원산지확인서>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법적 책임⁶⁾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FTA 원산지증명 업무는 그 특성상 해외 바이어까지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우리 회사가 적법하게 발급하지 못한 <원산지확인서>로 인하여 고객사(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까지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외 바이어가 면제받은 관세를 모두 추징당하게 된다면 법적 책임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5) FTA관세특례법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에 따라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동 법 44조(벌칙) 2항 3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FTA관세특례법 제44조(벌칙) 2항 1호에 따라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마치며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FTA 원산지업무 당사자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최초 FTA 발효시기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FTA 업무를 체감하게 된 것은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되면서부터 일 것이다.⁷⁾

EU를 기준으로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FTA 원산지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현장의 표현을 빌린다면 “노력 대비 성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업무⁸⁾”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재의 상황이다.

관세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정에 맞게 리스크를 안내하면서 업무를 조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담당자(대기업도 큰 차이는 없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수출입 업무 외에 결코



간단하지 않는 업무가 추가되어 매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원산지 조사 등의 사후 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흔쾌히 담당하고 싶은 업무는 결코 아닐 것이다.

거시경제의 차원에서 FTA, 즉 자유무역의 확대는 당연한 흐름이고,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은 분명하다.

다만, 확대되는 FTA만큼 이를 현장에서 이행하고 쉽지 않은 FTA 원산지관리 업무와 씨름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배려가 제공된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7) 2011년 EU가 발효되고 이듬해 미국이 발효되면서 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등의 FTA 관련 관세행정 업무가 폭증하였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FTA에 대한 인식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였다.

8) FTA의 효과로 수입자의 관세절감효과가 발생하지만 해당 관세절감분을 수출자가 체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